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729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16.

주 문

1.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604,920원, 지방교육세 3,632,15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소 및 경비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6. 5. 4. 본점을 [redacted] B건물'으로 하여 설립된 후 [redacted]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7. [redacted]시 [redacted]구 C건물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서울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서울 부동산의 취득가액 2,367,91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716,600원, 농어촌특별세 4,735,830원, 지방교육세 9,471,66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4. 2. 1. 이 사건 서울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8.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익산시 D'(이하 '이 사건 익산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고, 이 사건 서울 부동산에 서울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redacted]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에 따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2017. 7. 10. 이 사건 [redacted] 부동산 중 지점으로 사용되는 4층 면적 138.6㎡의 취득가액 430,514,2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604,9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444,11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940,240원 포함), 지방교육세 3,632,15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9

188,040원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0. [redacted]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11. 8. 기각되었고, 2017.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서울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입찰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본점을 이 사건 익산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외관을 취하였을 뿐, 실제로는 여전히 이 사건 서울 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서울 부동산에 원고의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서울 부동산에 원고의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서울 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점을 서울 밖으로 이전하고 이 사건 서울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어서, 원고가 지점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서울 부동산을 사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취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대도시에서 법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9

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redacted]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redacted] 부동산을 2년 이상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다가 본점을 서울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같은 건물을 [redacted] 지점 사무소로 계속 사용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서울 부동산을 서울 지점의 설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서울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5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9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김주성

판사 차선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9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9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19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끝.